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211
----------	------

2024년 12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0월 16일 강석주 의원
-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 상정일자 : 제327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11월 21일 상정·의결(수정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강석주 의원)

1. 제안이유

- 스토킹범죄는 개인정보 유출, 신변위협, 강력범죄 피해가 복합적으로 일어나 피해자의 정보보안 및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
- 이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대한 업무는 피해자의 접근성·법적 보호를 위한 공공성 및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함

- 따라서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위탁 관련 규정을 공공위탁으로 명확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1)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으로 변경함(안 제11조제1항)
- 2) 민간위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제2항)

3.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성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등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위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임.

2 주요 개정사항 검토

가. 사업의 필요성

- 정부와 서울시는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스토킹행위는 집착적 성향이 강한 특징으로 초범이나 경미한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담을 병행하는 등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¹⁾.
-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스토킹 범죄 예방적 대책 차원에서 초기상담부터 일상회복과 사후 지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¹⁾ 뉴시스(2022.12.20) 「서울시, 스토킹 상담치료로 스토킹 추가 범죄 막는다」
국민일보(2022.12.23.) 「스토킹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

나.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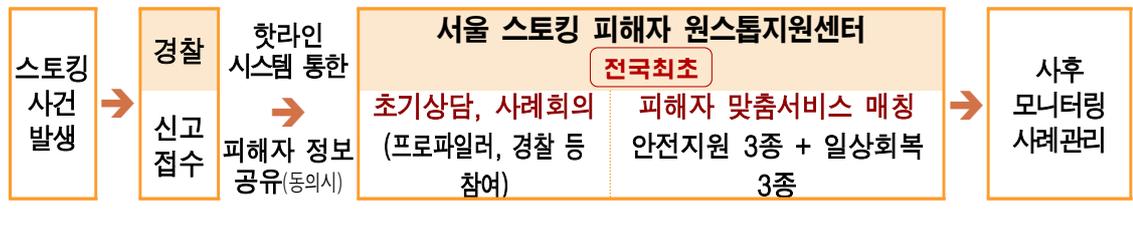
-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²⁾에 근거하여 '23년 시범사업 후 '24년 서울여성가족재단이 공기관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임(24.21.1).

<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추진 현황 >

- 서울시-서울경찰청, 스토킹 피해 원스톱지원 협약 추진('23.9.13)
 - 서울시장, 서울경찰청장 참석 공동협력 협약(MOU) 추진
-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시범사업 운영('23.9.~'24.1.)
 -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민간경상사업보조를 통한 시범사업 운영)
-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공기관위탁 추진계획 수립('24.1.17)
-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공기관 위탁 협약체결('24.2.1.)
-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24.2.1~)

<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개요 >

- 사업근거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 운영기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인력구성 : 총 7명(센터장 1, 통합사례관리 2, 피해지원 3, 행정지원 1)
- 위탁기간 : '24. 2. 1. ~ '27. 1. 31.(3년)
 - ※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단 운영(민간자본사업보조) : '23.9.18.~'24.1.31.
- '24년 예산 : 446백만원
- 사업내용 :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지원 및 사례관리 운영
 - 일상회복지원 3종(심리상담, 법률, 의료비)
 - 안전지원 3종(거주지이전비, 민간경호서비스, 보호시설 입소)
 - 특화지원1종(온라인 삭제지원)
- 사업대상 : 서울경찰청 및 경찰서(31개서) 접수 스토킹 피해자
- 지원절차



²⁾제8조(지원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의 보호·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 개정사항 검토

- 개정안 제11조는 스톡킹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 사업 관련 사무 위탁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동 조의 각 호 기관·단체들 중 제2호의 기관, 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연기관에 공공위탁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스톡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p>	<p>제11조(사무의 위탁) ① ----- ----- ----- ----- ----- ----- ----- -----제6조제2호의 기관에 공공위탁할 수 있다.</p> <p><삭 제></p>

(공공위탁의 법령상 근거)

- 상위법령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지원시설의 설치)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사무위탁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아래와 같이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열거하고 있음.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업무의 위탁)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출연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연기관
3. 다음 각 목의 법인이나 단체
 - 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
 -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
 - 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4.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스톱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동 개정안에서는 시행령 제6조(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업무 위탁)에서 열거한 위탁기관·단체 중 특히 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즉 개정안의 공공위탁 규정은 법령상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서 가능하다고 판단됨.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위탁’ 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서도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사무의 공공성)

- 스토킹범죄는 개인정보 유출, 신변위협, 강력범죄 피해가 복합적으로 일어나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안성 및 법적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조례상의 위탁사무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업무는 공공성이 크다고 판단됨.
- 특히, 경찰청(학대예방경찰관)과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핫라인 구축으로 피해자의 민감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자격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보안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민간위탁 절차 준용규정 삭제 검토)

- 개정안에서는 공공위탁을 규정하면서 민간위탁 절차 준용 규정(제11조 ②항)을 삭제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17조는 공공위탁(제2항)과 민간위탁(제3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3항에 근거하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공동단체에 위탁하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움(법제처 의견) 따라서 조례 개정안에서 공공위탁을 규정하면서 민간위탁절차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법제처 관련 의견

- ◆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그 민간위탁 사무 및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서울특별시장 동법 2동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특정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마련된 별도의 위임·위탁에 관한 자치법규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법제처 2017. 5.23. 회신 의견 17-0103)

- 다만, 이 조례 개정안에는 공공위탁하면서 구체적인 수탁기관이 명시되지 않고 있는데, 어느 기관에 위탁할지에 대한 의회의 사전 통제수단으로서 위탁시 시의회 동의나 사전보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하다고 판단됨.

법제처 관련 의견

- ◆ 법제처의 의견도 같은 취지로서 '사업의 구체적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검토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기관에 소관 사무를 위탁할 때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봄(법제처 2020. 11. 12. 회신 의견 20-0228)

라. 부서 의견

- 집행부서인 양성평등담당관은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정보보안·안전성을 위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을 공공성 및 보안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에 위탁하도록 관련 규정 변경이 필요하며 공공위탁에 따른 민간위탁 절차 적용에 관한 조항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3 종합 의견

- 동 개정안이 상위 법령에서 ‘스토킹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기관·단체들 중의 하나인 출자·출연기관에 공공위탁하고, 민간위탁절차 준용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 조례 개정안에는 공공위탁하면서 구체적인 수탁기관이 명시되지 않고 있는데, 어느 기관에 위탁할지에 대한 의회의 사전 통제수단으로서 위탁시 시의회 동의나 사전보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향후 공공위탁시에는 공공위탁의 취지를 고려해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 등을 갖추고 있는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문 의 처

02-2180-8146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 요지

1. 수정이유

- 민간위탁과 달리 「지방자치법」 공공위탁 근거 규정 이외에 공공위탁 선정·절차 등의 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공공위탁 시 사전 통제수단으로서 시의회의 동의나 사전 보고를 하도록 조문을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연기관은 “서울특별시의회의 보고를 거쳐” 공공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함. (안 제11조제1항)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211
----------	------------

제안년월일 : 2024년 11월 21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민간위탁과 달리 「지방자치법」 공공위탁 근거 규정 이외에 공공위탁 선정·절차 등의 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공공위탁 시 사전 통제수단으로서 시의회의 동의나 사전 보고를 하도록 조문을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연기관은 “서울특별시의회의 보고를 거쳐” 공공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함. (안 제11조제1항)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제1항 중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호에 기관에 공공위탁할 수 있다.”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호에 기관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보고를 거쳐 공공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제6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를 “제6조제2호의 기관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보고를 거쳐 공공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